

## 2025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R&D 성과 또는 농림식품 신기술인증(NET)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및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1.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 또는 농림식품 신기술인증(NET)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 농림축산식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제품의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 가능

#### < 추진 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55호, 2023.8.29.)

## 2. 신청 자격

구 분	신청자격 (각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b>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b></p>	<p>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p> <p>② 공고마감일 기준 5년('20.8.30. ~ '25.8.29.)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21.6.3. 이전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21.6.3. 이후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또는 성공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 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p> <p>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p> <p>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9.)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 단,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공고마감일(8.29.) 기준 1년 이내 ('24.8.30.~'25.8.29.)인 경우에는 신청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신청제품이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제품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간주</p>
<p style="text-align: center;"><b>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b></p>	<p>①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공고마감일(8.29.)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하며,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p> <p>② 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등록된 전용실시권 보유 기업도 인정</p> <p>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p> <p>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9.)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 단,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공고마감일(8.29.) 기준 1년 이내 ('24.8.30.~'25.8.29.)인 경우에는 신청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신청제품이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제품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간주</p>

※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 3. 신청대상 제품(혁신성·공공성 보유 제품)

#### < 혁신성 >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공공성 >

-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 4. 신청 기간 및 방법

#### 가.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 2025. 7. 31.(목) ~ 8. 29.(금), 17:00 까지
- 접수기간 : 2025. 8. 14.(목) ~ 8. 29.(금), 17:00 까지

#### 나. 신청 방법

##### 1)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필수)

-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구 분	나라장터 등록(조달업체/식별번호) 안내
등록방법	○ www.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등록 매뉴얼	○ (조달업체 등록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상단 'e-고객센터' → 이용자 등록절차 → 조달업체(상세절차 다운로드) ○ (물품식별번호 관련) goods.g2b.go.kr(목록정보시스템) 상단 '공지사항' → '분류공지사항' → 게시물 '알기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문의처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1588-0800

##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 분	접수 방법 안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기술상용화플랫폼(newat.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기술인증 → 혁신제품 → 혁신제품 신청 → 신청서 작성 → 내용입력 및 제출 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농림식품 신기술인증 기술 적용 혁신제품	* 기존 FRIS 회원인 경우 기존 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R&D 사업이 아닌 타 기관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R&D를 수행한 경우 담당자 이메일(tlee@ipet.re.kr)로 접수 마감일시까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문의처	○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 061-338-9794 ○ (시스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유지보수팀 : 061-338-9846

## 5. 제출서류

###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연번	서 식 명	제출구분	관련 서식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 신청서	필수	첨부 1
②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필수	첨부 2
③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 계약서 등 증빙자료) * 연구수행실적증명서 등	필수	-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⑤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수	-
⑥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 작성란 포함)	필수	첨부 5
⑦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요시	-
⑧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공고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필요시	-
⑨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필요시	첨부 6
⑩	기타 기술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필요시	-

### < 농림식품신기술인증 기술 적용 혁신제품 >

연번	서 식 명	제출구분	관련 서식
①	혁신성·공공성 인정(NET 적용)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필수	첨부 3
②	혁신성·공공성 인정(NET 적용) 혁신제품 설명서	필수	첨부 4
③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인증서 사본	필수	-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⑤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 작성란 포함)	필수	첨부 5

연번	서 식 명	제출구분	관련 서식
⑥	지식재산권 보유 증빙 자료(특허증 및 등록원부, 기술이전(실시권) 계약서 등)	필수	-
⑦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요시	-
⑧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공고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필요시	-
⑨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필요시	첨부 6
⑩	기타 기술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필요시	-

## 6. 추진 및 평가절차

### 가. 추진절차

	시행주체	세부내용
제품등록 ↓	신청기업	○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 ↓	신청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제품 평가·심사 ↓	평가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서류 검토 ○ 혁신제품 평가(발표/공공성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 ○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별도진행)
심의예정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여부 심의·의결
지정 및 인증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업)

## 나. 평가절차

	시행주체	세부내용
서류검토	평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li> <li>○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li> </ul>
↓		
1차 발표평가(연구개발) or 공공성평가(신기술인증)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공공성, 시장성, 혁신성 등 평가 * 평균 70점 이상 통과(최고, 최저 점수 제외)</li> <li>○ (신기술인증) 공공수요 적합성, 지정 필요성 등 평가 * 평균 75점 이상 통과(최고, 최저 점수 제외), 공공성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li> </ul>
↓		
2차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확인, 연구개발기술 / 인증신기술 적용 여부,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성능확인 등 심사</li> <li>○ 평가위원회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시 통과</li> </ul>
↓		
조달 적합성 검토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 법정무인증 등</li> </ul>
↓		
3차 종합심사	종합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차 심사 결과의 적정성, 혁신제품 지정기준 적합성 여부 심사</li> <li>○ 종합심사위원회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시 예정 공고</li> </ul>
↓		
심의 예정공고	평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평가기관이 20일 이상 공고</li> <li>○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대상 추천</li> <li>○ 이의신청의 타당성 검토 후, 원안확정 또는 재평가</li> </ul>
↓		
종합심사위원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 소관 부처 : 기재부·조달청)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li> </ul>

## 다. 평가기준

###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기준

구분	심사기준
발표평가	<p><b>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b></p> <p><b>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li> </ul> </li> </ul> <p><b>나. 공공구매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li> <li>*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li> <li>*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li> </ul> <p><b>다. 현안의 시급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li> <li>*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li> <li>*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li> </ul> <p><b>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li> <li>*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li> <li>*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li> </ul> <p><b>2. 시장성(20)</b></p> <p><b>가. 기대 시장규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li> </ul> </li> <li>○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li> </ul> </li> </ul> <p><b>나. 타 산업 파급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구매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li> </ul> </li> <li>○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li> <li>*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li> </ul> </li> </ul> <p><b>3. 혁신성(40)</b></p> <p><b>가. 기술·제품의 신규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li> <li>*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li> </ul> </li> </ul> <p><b>나. 기술·제품의 탁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li> </ul> <p><b>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li> <li>○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li> </ul>

<b>현장평가</b>	<p><b>1. 제품의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li> </ul> <p><b>2. 연구개발기술 적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li> </ul> <p><b>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li> </ul> <p><b>4. 제품의 성능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li> </ul> <p><b>5. 기타 확인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li> </ul>
-------------	---

## 2.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 적용 혁신제품 평가기준

구분	심 사 기 준
<b>공공성 평가(서면)</b>	<p><b>1. 공공수요 적합성(45)</b></p> <p><b>가. 공공의 활용(도입)영역 존재 여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에서 해당 기술과 제품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는지 여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li> </ul> <p><b>나. 공공의 문제해결 기여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제품인지 여부</li> </ul> <p><b>다. 공공 계약 가능 여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조달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 * 정부조달 등을 통해 제품 공급 계약 및 납품이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li> </ul> <p><b>2. 지정 필요성(30)</b></p> <p><b>가. 기존 유사 방식과의 차별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여부</li> </ul> <p><b>나. 도입 이후의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후 공공부문 및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li> </ul> <p><b>3. 정책(제도) 부합성(25)</b></p> <p><b>가. 정부혁신과의 관련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의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및 국민편의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li> </ul> <p><b>나. 기술 및 문제해결의 창의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의 혁신을 통해 공공문제를 도전적이고 독창적으로 해결하였는지 여부 등</li> </ul>
<b>현장평가</b>	<p><b>1. 제품의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li> </ul> <p><b>2. 혁신성·공공성 인정 기술 적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제품에 인증신기술 등 혁신성·공공성 인정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li> </ul> <p><b>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li> </ul> <p><b>4. 제품의 성능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li> </ul> <p><b>5. 기타 확인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li> </ul>

## 7.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044-201-245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061-338-9794 tlee@ipet.re.kr
	신청·접수 시스템 관련	061-338-9846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http://www.ipet.re.kr)) 공고 참조

<첨부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생산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혁신제품 명칭 :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물품식별번호	식별명	제조여부			
	1						직접 또는 OEM			
	2									
	3									
기술구분	코드 구분		중심 분야	관련 분야1	관련 분야2	관련 분야3	관련 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기술분야가 유사한 항목으로 반드시 기재(2개 이상 분야 해당 시 모두 선택하여 기재)										
유형	<input type="checkbox"/>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input type="checkbox"/>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주요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붙임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 자료)</li> <li>2. 제품 규격서</li> <li>3.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li> <li>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li> <li>5.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 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등 공고 상 기재된 구비서류 일체</li> </ol>
-------	--

<첨부 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4쪽 중 제1쪽)

1. 개발제품 핵심내용

가. 참여 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내역사업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연구기관 (협동·공동·위탁)	참여형태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
총 연구기간	20XX. X. X. ~ 20XX. X. X.			
연구내용 요약	* 3~4줄로 주요 연구내용 기술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1차년도(20XX)			
2차년도(20XX)			
3차년도(20XX)			
합계			

나.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다.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기술이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

## 라.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신청제품의 농식품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제품의 적용 시 기대되는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핵심요소의 농식품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제품보다 나은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 2. 기술의 혁신성

### 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여부
-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 2. 공공구매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 3.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나. 시장성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 2.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다. 혁신성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2.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3. 개발자원 투입 및 개발방법

### 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연구개발비용과 기간을 기재

연구개발기간은 기술개발 완료단계까지의 기간을 말함

### 나. 기술개발방법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그 이외의 방법인지를 표기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신청기술·제품과의 관계 등을 기재

### 다.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별(또는 방법별) 담당부서 및 개발내용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인 경우 각각의 담당부서 및 개발내용을 요약하여 서술

기술도입 또는 용역도입을 한 경우 그 내용과 신청기술과의 관계를 요약하여 서술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함

#### 4.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 가.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1			
2			
3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 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첨부 3> 혁신성·공공성 인정(NET 적용) 혁신제품 신청서

##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생산품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혁신제품 명칭 :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물품식별번호	식별명	제조여부
	1						직접 OEM
	2						
	3						
신청제품 인증정보	- 신기술(NET)인증 인증명: - 신기술(NET)인증 인증번호: -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00.00.00. ~ 00.00.00. 주요내용(인증 기술 특징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에 따라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b>붙임 서류</b>	1. 농림식품신기술인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제품 규격서 3. 별지 제8호서식의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설명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5.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등 공고 상 기재된 구비서류 일체
------------------	---

<첨부 4> 혁신성·공공성 인정(NET 적용) 혁신제품 설명서

##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설명서

(3쪽 중 제1쪽)

### 1. 적용 기술 인증내용

#### 가. 인증정보(농림식품신기술인증)

인증 기술명	
인증번호	
인증 기간	20XX. X. X. ~ 20XX. X. X.
주요내용 요약	* 3~4줄로 주요 기술 내용 기재

#### 나. 기술 적용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 다.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기술이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

#### 라.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신청제품의 농식품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제품의 적용 시 기대되는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핵심요소의 농식품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제품보다 나은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

## 2. 기술의 혁신성

### 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여부
-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 2. 공공구매 필요성(공공수요 적합성)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 공공부문에서 해당 기술과 제품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는지 여부,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공공계약 가능성 등

#### 3.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 신청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후 공공부문 및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5. 정책(제도) 부합성

- 정부혁신과의 관련성
- \* 기술의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및 국민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 기술의 혁신을 통해 공공문제를 도전적이고 독창적으로 해결하였는지 여부 등

### 나. 시장성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 2.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다. 혁신성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2.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3.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 가.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1			
2			
3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 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첨부 5>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제품규격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업작성란 포함)

[첨부서식 5-1]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신청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혁신제품명			
구분	물품분류번호(8자리)	물품식별번호(8자리)	모델명
1			
2			
3			
기술인증(특허 등)	구분	특허등록번호	특허명
	1		
	2		
※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 기재 요망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는 별도 제출 ※ 해당되는 경우 붙임3 참고하여 별도 제출			
법정의무이행자료	※ 해당되는 경우 붙임3 참고하여 별도 제출		
우수조달물품지정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MAS계약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신청제품 제조여부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공급	<input type="checkbox"/> 협업체

성능 기준(양식)

품질기준					비고
시험항목	단위	목표기준	달성실적	검사기준	

제품 설명

- 제품의 용도 :
- 제품의 주요 기능 :
- 기타사항(본 제품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유롭게 기재)

※ 자기점검표에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신청제품의 이해 및 관련 규정 등 만족 여부에 활용되며 작성·제출함에 있어 허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귀속됨을 안내드립니다.

0000 년 00 월 00일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 (제 품 규 격 서)

## 제품명

회사명 : 00000

### 1. (제품명)의 개요

#### 1.1 적용범위

#### 1.2 특징

### 2. 규격

#### 2.1 제원

구분	물품목록번호	모델명	세부 사양		
			예) 치수	예) 용도	예) 정격
1	-				
2	-				

#### 2.2 품질기준

구분	물품목록번호	모델명	세부 사양		
1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적용기술	인증(등록)번호	기술명(발명,고안명칭)	발행기관	비고

### 3. 구성, 재료

제품을 구성하는 구성품이 관계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KC) 또는 법정의무인·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 반드시 해당되는 승인(인증 또는 허가)된 제품을 사용한다.

#### [총괄표]

모 델 명	재 료	자 재 구 성 표

#### [주요자재소요량]

순번	모델명	규격치수 (mm)	자재소요량					원산지
			품명	모델(부품)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1								
2								
3								

## 4. 형태

### 4.1 전체사진

### 4.2 제품구조

### 4.3 마감 및 외관

## 5. 제조 및 가공

## 6. 기능 및 성능

### 6.1 기능

### 6.2 성능 및 시험방법

## 7. 하자보증

## 8. 포장 및 표시

### 8.1 포장

### 8.2 표시

##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 (제 품 규 격 서)

## 제품명

회사명 : 00000

### 1. (제품명)의 개요

#### 1.1 적용범위

#### 1.2 특징

### 2. 규격

#### 2.1 제원

구분	물품목록번호	모델명	세부 사양		
			예) 용도	예) 구매단위	예) 라이선스 (사용기간)
1	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				
2	-				

#### ※ 소프트웨어(S/W) 설치를 위한 권장사양 및 운영환경

(권장사양 및 운영환경은 구매자가 사전에 갖추어야 할 환경으로써, 납품 시 불포함)

구분	물품목록번호	모델명	권장사양(H/W)	운영환경
1				
2				

## 2.2 품질기준

적용자재	시험항목	적용기준	시험방법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적용기술	인증(등록)번호	기술명(발명,고안명칭)	발행기관	비고

## 3. 구성, 재료

구분	종류	수량	비고

## 4. 형태

### 4.1 전체사진

### 4.2 제품구조 (소프트웨어 구성 개념도)

### 4.3 마감 및 외관

## 5. 제조 및 가공 (소프트웨어 개발과정)

## 6. 기능 및 성능

### 6.1 기능

### 6.2 성능 및 시험방법

## 7. 하자보증

## 8. 포장 및 표시

### 8.1 포장

### 8.2 표시

##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주관 부처							
신청자 (신청자 작성)	기업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신청제 품 현황 (신청자 작성)	명 칭	▶ 제품명 :					
		구분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	모델명
		1					
		2					
	3						
용 도	▶						
기 능	▶						
인 증	▶ 기술인증 : 특허, NEP 등 ▶ 품질인증 : 환경표지인증, KS인증, K마크 등 ▶ 법적의무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수도법 등						
검토의견							

<첨부 6> 법정 의무인증자료 목록

**법정 의무인증자료 목록**

회사개요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소	(□□ - )		
신청제품명				
물품식별번호				
법정 의무 인증자료 1)	연번	종류	유효기간	관련법령
	1	kc인증(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만료기간없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	○○인증	19.5.28 ~ 24.5.27	-
	3			
	4			
	5			

**\* 법정 의무인증(KC 등) 해당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리스트를 작성하고 진행여부를 명기할 것**

1) 법정 의무인증자료 :

- ① 종류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의 목록을 기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필수)
- ② 유효기간 : 해당 법정 의무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재 예시) 19.5.28~24.5.27 또는 만료기간 없음
- ③ 관련법령 :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